

인력지원

- ☑ 관련부처
산업통상자원부
- ☑ 지원대상
중소·중견기업
- ☑ 신청시기
1, 2, 3, 4/4분기

11. 신규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

중소·중견기업에 이공계 석·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공급하여, 기업과 인력간 수급 mismatch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

☞ 지원대상

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, 사업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 연구인력(이공계 석·박사)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
 - 중소기업이라 함은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
 - 중견기업이라 함은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(다만,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)
- 인력
 - 이공계 석·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로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
 -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 가능하며 바이오분야의 경우에만 의·치·약학 학위자 신청 가능
 -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인력 및 임신·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경우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
 - 신청 제외대상
 -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,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-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
 -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
 - *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
 -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
☞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매년 평가를 통하여 최대 3년간 지원
- 지원인원 : 기업당 최대 2명(신규 지원규모 400명 내외)

- 지원조건 : 고용지원기업은 기준연봉 이상을 지원인력에게 지급하고, 지원인력을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

[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지원금 현황]

(단위 : 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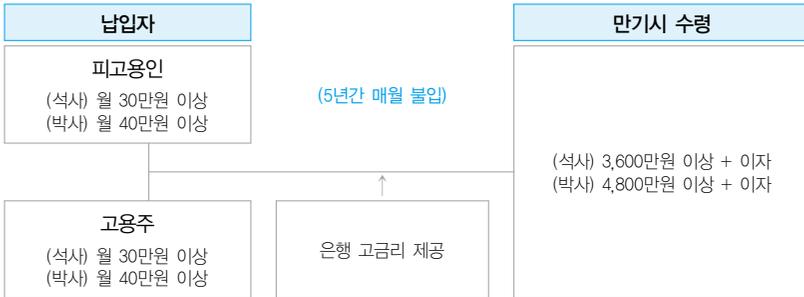
구분	석사	박사
기준연봉	2,700	3,300
정부지원금/연	1,350(기준연봉대비 50%)	1,650(기준연봉대비 50%)

* 기준연봉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
:: 지원조건

- 선정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'희망엔지니어링 적금' 의무가입

[희망엔지니어링 적금]



*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,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만 각각 수령

*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

:: 신청절차

- 신청기간
 - 1차 : 2014. 3. 1(토) ~ 5. 31(토)
 - 2차 : 2014. 6. 1(일) ~ 8. 31(일)
 - 3차 : 2014. 9. 1(월) ~ 11. 30(일)
- 신청방법 :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partner.istk.re.kr>)에서 회원가입 후 관련서류 작성하고 온라인 접수



www.nst.re.kr

-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·중견기업 R&D센터 (02) 574-5724~8
-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